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최연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16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9. 1.

발 의 자 : 최연숙 · 양향자 · 윤상현
김영선 · 이태규 · 권은희
김용관 · 김예지 · 장동혁
서정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정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.

하지만,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에서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운영하는 등 치료보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, 지정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33년 전 규정에 머물러 있음. 따라서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, 평가 및 재지정 등 관련 규정을 현실화,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치료보호기관의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, 지정 절차, 평가, 재지정 및 지정취소, 전문교육,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등 관련 규

정을 명문화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0조).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.

1.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소변,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등
2.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돕거나 그 외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 등
3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

③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치료보호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

및 마약류중독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치료보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
2.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
3.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

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게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,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.

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의 제2항제2호에 따른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을 개발·운영하여야 하며,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⑧ 제6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

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고,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⑨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및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.

가.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
나.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

다.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·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

라.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·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

마.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2.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.

가. 시·도지사가 설치·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

나.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·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

다.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·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하려면 각각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·운영, 지정·평가·재지정, 지정취소,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, 전문교육,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와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·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치료보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(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) ① (생 략)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,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.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	제40조(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은 다음의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. 1.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소변,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등 2.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돕거나 그 외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 등 3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③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

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,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·운영 및 지정,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,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·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치료보호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마약류중독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치료보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

2.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

3.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
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
경우

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
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
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
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
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
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
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
다.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
개월 이내로 하고, 치료보호 기
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.

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
따라 설치하거나 지정된 치료
보호기관의 제2항제2호에 따른
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
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
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을 개
발·운영하여야 하며, 이를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
위탁할 수 있다.

⑧ 제6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
는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
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
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

<신 설>

고,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⑨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및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.

가.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
나.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

다.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·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

라.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·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

마.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2.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

<신 설>

<신 설>

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.

가. 시·도지사가 설치·운영
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
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
별검사에 관한 사항

나.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
시작·종료와 치료보호기
간 연장에 관한 사항

다.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
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
관하여 시·도지사가 회의
에 부치는 사항

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
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판별검
사 및 치료보호를 하려면 각각
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또는
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
의를 거쳐야 한다.

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
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
치·운영, 지정·평가·재지정,
지정취소, 판별검사 및 치료보
호, 전문교육, 중앙치료보호심
사위원회와 지방치료보호심사
위원회의 구성·운영·직무 등

	<u>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